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가단282873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2. 16.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최희준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21년 10월 6일 C 주식 3,000주를 주당 금95,769원, 합계287,307,000원 중 계약금 15%, 금43,000,000원, 2021년 10월 15일에 잔금 및 주식입고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D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2021년 10월 7일 계약금 금43,000,000원을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에게 송금을 하였으며, 피고는 2021년 10월 15일에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입고하면 바로 잔금을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C 회사측에서 사무인수(통일주권) 교체 서류 미비로 부득이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입고일을 2021년 10월 19일로 연기되었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를 믿고 연기에 동의하였고, 10월 19일도 주식을 입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다렸으나 10월 22일에도 역시 주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10월 22일 오후 4시경 원고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10월 26일은 확실하게 입고되니 한 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만약 10월 26일에도 입고가 되지 않으시 계약금을 반환 해주겠다고 먼저 제시하며, C 사무인수(통일주권)가 늦어지더라도 주식은 피고에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11월이라도 주식이 나오면 원고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B의 말을 믿고 만약 입고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2021년 10월 26일에 바로 반환해 줄 것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2021년 10월 26일 오전에도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주식도 언제 나올지 모르니 약속한대로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도 송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곧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입금하지 않고 "오후 2시~3시 사이에 송금 한다", "미팅중이라 끝나고 연락 준다"고 하더니 3시 30분 경에는 "곧 처리 된다"고 하여 5시 퇴근 전까지 입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입금되지 않았고, 10분 후, 20분 후 계속 미루더니 오후 6시가 다 되도록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그 다음날 10월 27일에도 오전 11시30분 전까지 확실하게 입금처리 된다고 하더니 다시 오후 1시까지 미루었으나 입금되지 않았으며 오후 2시에 해당기관과 주식 입고관련 미팅이 잡혔다고 핑계 대며 미루기에 해당기관 1층 로비에서 피고를 기다렸으나 2시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피고에게 전화해서 "해당 기관에서 미팅중이냐"고 물었더니, "외부 커피숍에서 미팅 중"이라며 "미팅 끝나고, 확약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3시경 기관 관계자와 작성한 확약서를 보여주며 11월 5일 주식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22일 약속한대로 나중에 주식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진행하더라도 일단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현금보관증을 써주며 오늘은 자금이 안 되니 10월 28일 오후 3시까지 반드시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21년 10월 28일 은행 마감시간 오후 4시까지 입금하여 준다고 하고, 시간

만 끌고 4시가 넘었음에도 은행 안에 들어가 있으니 "곧 처리 된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오후 5시가 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또 내일로 미루며 "내일은 오전 중에 틀림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입금되지 않았고 또 오후 1시로 미루고, 또 오후 3시로 미루었으며 오후 5시까지 입금 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 오후 5시 전에 처리하고 연락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은 파기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송금한 계약금이 어디로 갔기에 반환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